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차 별 시 정 위 원 회

### 결 정

사 건 21진정0426300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중지 통보 등

진 정 인 ○ ○○○○(○○○○ ○○○○○○)

피진정인 1. □□광역시 □구청장

2. □□광역시장

###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각하합니다.
2. 피진정인 1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피진정인 1에게,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 이슬라믹센터'(이하 '진정단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2020. 9. 28.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았다.

가. 피진정인 1은 2021. 2. 16.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정서에 따른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중지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이슬람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1은 2021. 2. 9.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표현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철거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진정단체 구성원들의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진정인 2 □□광역시장은 「□□광역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 인권조례'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의 부당한 공사중지명령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별행위를 용인하였다.

## 2. 당사자 주장

###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단체가 2020. 12. 3. 해당 건축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였고 2021. 2. 16에는 주민들의 탄원서가 □구청에 접수되었다. 공사 강행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어 원만한 협의를 위해 탄원서 접수 당일인 2. 16. 공사중지 조치를 하였다. 공사중지 조치는 “건축주는 공사로 인해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 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한 것이고, 이슬람 사원 건립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슬럼화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 우려와 외부인들이 입주를 꺼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다.

주거밀집지역에 타 종교시설 또는 장례식장, 요양원 등의 대규모 집회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대규모 주민반발이 발생하였다면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이슬람 사원이라는 것이 공사 중지의 이유는 아니다.

□구청에서는 진정한 측이 대체 부지를 물색하여 제시하면 건축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무슬림 학생들이 수학 중인 △△대학교 측에도 해결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위 진정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원중재 회의 개최 및 건축주 면담을 해왔으며 향후 필요시 중재를 하겠다.

##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측에서 2021. 2. 9. 이후 현수막을 게재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후 불법현수막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2. 24. 이후 집회신고를 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바,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

고물법'이라 한다) 제8조(적용 배제) 제4항에 따라 정비하지 않았다.

2021. 6. 29. 재차 확인 결과 □구청 앞을 제외한 △△대 4개문(북문, 서문, 동문, 쪽문) 주변과 ◇◇동, ◆◆동 일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기간이 끝난 상태로 파악되어 해당 지역 모두 현장 확인 후 관련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였다.

'이슬람 혐오표현이 포함된 현수막' 관련 '본거지'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 사용에 대해 주민대표 측에 자제를 요청하여 해당 단어 사용은 자제 중인 상태이고, 집회 장소에 전시한 '모든 이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지만 모든 테러분자는 이슬람이다'라는 문구의 피켓도 2021. 8. 29. 발견 즉시 정비하도록 요청하여 현재 정비된 상태이다.

구청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게시하거나 시위에 활용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 및 피켓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주민대표에게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주민 측에서 정비가 어려울 경우 직접 정비하고 있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전문가 의견, 현장조사 결과,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단체는 2014. 12. 결성되어 □□광역시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고 무슬림 신자들의 이슬람 예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진정단체는 □□광역시 □구 ◇◇동 XXX-X 등 네 필지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고자 피진정인 1로부터 2020. 9. 28.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2021. 2. 16.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 외 350명)의 탄원서를 접수하고 건축허가조건을 근거로 같은 날 진정단체에 공사중지를 통보하였다.

나. 진정단체는 2021. 7. 5. 피진정인 1을 상대로 행정소송(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2021구합XXXXX)을 제기하였고, 소(訴)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하였다. □□지방법원 행정1부는 2021. 7. 19.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2021. 7. 19. □□지방법원 2021아XXXXX 판결)하였다.

다. 공사 반대 측 주민들은 2021. 2. 26.부터 2021. 8.초까지 건축현장 인근 지역, □구청, △△대학교 4문(북문, 서문, 동문, 쪽문), ◎◎◎ 동편, □□시장 정문 등에 집회신고를 이어가고 있다.

라. 피진정인 1은 2021. 2. 9. 이후 불법현수막으로 판단될 경우 정비하였으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한 광고물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건축현장 인근 지역에는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현수막과 피켓이 다수 게시되어 있다. 게시된 현수막과 피켓은 “주민 죽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 결사 반대한다”, “거짓말로 시작한 이슬람사원 건축 두 번은 속지 않는다”,

“테러의 온상 이슬람 사원 절대반대“와 같은 공사 반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이슬람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와 같은 타 문화에 대한 배척, “Muslim who deceive and threaten their neighbors leave your country immediately(이웃을 속이고 위협하는 무슬림들은 즉시 이 나라를 떠나라)“, Muslim who kill people brutally and behead them get out of this area. Terrorists! right now(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참수하는 무슬림은 당장 떠나라. 테러리스트들아 당장)“, “Islam is an evil religion that kills people(이슬람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 종교다)“ 등과 같이 해당 종교와 신자들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나 편견에 기대어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마. □□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공사 반대 측 주민들은 공사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교대로 현장을 지키며 물리력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바. 국내에 건립된 이슬람 사원(모스크)의 입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55개 중 36개(65%)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된 산업단지 등 공단 주변에 위치해 있으나, 주택가에 11개(20%), 대학가(4개) 및 대로변(4개)에도 상당수가 위치해 있어서 주택가 및 대학가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이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다<sup>1)</sup>.

사. 국내 이슬람 사원 현황을 연구한 ▽▽대학교 ▽▽▽▽ 연구소 ○○○ 책임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이슬람 예배의식은 개인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음이 크지 않고 일 5회의 예배가 의무사항인 것도 아니며, 일반 주택보다

1) 한국 내 모스크 분포와 이용에 대한 현황 연구(○○○, 2018년)

는 독립채 형식의 이슬람 사원이 오히려 인근 지역에 소음과 냄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무슬림의 유입으로 주택가가 슬럼화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 무슬림이 유입되는 것으로 무슬림의 거주지 형성을 슬럼화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시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판단

###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 혐오표현 대응 행동전략·계획,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심의 최종견해, 옥외 광고물법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 나. 진정요지 가항

#### 1)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대규모의 주민 반대로 인해 공사중지를 통보한 것일 뿐 종교적 이유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공사중지 통보의 원인으로 지목한 주민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선입견에 기반하여 이슬람 사원에 대한 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비록 피진정인 1이 주민 민원이라는 중립적 이유를 근거로 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슬람교라는 종교에 대한 거부가 근본적 원인이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종교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 관련 행정서비스라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차별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진정요지 가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인 2021. 7. 5. □□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21구합XXXXX)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로 각하한다. 그러나 공사중지로 인한 진정단체의 피해가 크고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 2) 의견표명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1항은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중지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인용하여 현재 피진정인 1이 통보한 공사중지 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있어 여전히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진정인 1이 공사 중지 통보의 근거로 삼은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탄원서에서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슬람 사원 주변 주거 밀집지역의 안전보장 불확실, 소음 및 냄새피해와 집단 의식행위 등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불안과 불만, 주변 지역 슬럼화 우려, 이슬람인의 대거 입국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이다. 그러나 이는 뚜렷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선입견에 기반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특히 이후 살펴 볼 진정요지 나항의 현수막 등의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단순히 생활상의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의 우려를 넘어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는 피진정인 1이 비록 주민 민원이라는 중립적 이유를 근거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이슬람교라는 종교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와 차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사 중지 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하므로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반대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진 공사중지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아울러 국내 이슬람 사원 현황을 연구한 전문가에 따르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소음과 냄새는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종교집회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독립채 형식의 이슬람 사원이 건축될 경우 일반 주택보다 소음과 냄새 유발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 1이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민원제기를 근거로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진정요지 사항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혐오표현 대응 행동전략·계획>에서는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기타 다른 정체성 요인에 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멸적이거나 차별적 언어 혹은 공격으로 말, 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여 이를 금지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 12. 대한민국의 제17-19차 통합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를 우려하였다. 특히 2018. 5. 약 500명의 예멘난민들이 제주에 도착한 이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언론매체에 표현된 혐오발언, 인종 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 전파 및 인종적 선입견의 증가를 우려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i)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오해 및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며; ii) 난민의 권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iii) 난민과 지역주민 간의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 1은 2021. 2. 9. 이후 주민들이 게재한 현수막에 대해 불법 여부를 확인 후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속을 하였고,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금지·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속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에 사용한 현수막의 경우에도 집회 기간이 끝난 것으로 파악된 경우 현장 확인 후 관련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였으며 추후에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신고되거나 인지할 경우 확인 후 단속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5호는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된 적법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적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이 사건 진정요지 나항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일부 현수막 및 피켓은 전형적인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해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참수하는 무슬림’, ‘사람을 죽이는 악마종교’, ‘테러리스트’, ‘전쟁지휘소’ 등과 같이 무슬림들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따르면, 이슬람에 대한 차별로 알려진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은 널리 퍼져있는 인종주의의 한 형태이며, 이것이 무슬림들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진정의 피해자들은 △△대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 무슬림과 그 가족으로 한국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과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지칭하는 무슬림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만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문화적·인종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현수막 등에 게재된 내용을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에는 “이슬람교”, “무슬림” 등과 같이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는 일반명사를 사용되고 있으나, 게시 주체가 이 사건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로서 정황상 해당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히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의 부작위는 진정인 등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5호를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되는 현수막 등에 대해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2 □□광역시장이 □□시 인권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한 구제조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2가 현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진정인과 진정단체 소속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 인권조례에 피진정인 2의 인권보장 노력 및 구제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상황에서 피진정인 2의 구체적 행정행위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의 피진정인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하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되 같은 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다.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제조치를 권고한다.

2021. 9. 2.

위원장 남 규 선

위원 김 민 호

위원 이 준 일

<별지>

## 관련 규정

###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 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4. □□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